기본 약관

2025년 03월 05일

코리아오브컴 주식회사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코리아오브컴 주식회사(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5층, 02-3444-7311 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위성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가입자(계약자를 포함합니다) 간에 서비스의 주요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 ②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금 및 기타 서비스 이용조건은 변경된 약관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이 약관의 제정 및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공시합니다.
- ④ 또한, 회사는 요금제, 부가서비스, 계약기간 연장 등 중요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메일, SMS 등으로 가입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 관련 법령과 개별 서비스계약서 및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주장비, 부대장치, 선로 기타 전기통신 에 필요한 설비
 - 2. 전기통신회선설비 :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송·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선로설비 및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등 부속설비
 - 3. 전기통신 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통신을 중계하거나 통신을 제공하는 것
 - 4. 위성통신단말기(단말기): 위성통신서비스 계약에 근거하여 위성통신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가입자가 사용하는 송수신 장치
 - 5. 관문 지구국 : 통신위성의 중계로 휴대이동지구국과 통신이 되도록 지상에 설 치한 위성 관문 지구국



- 6. 망 운용센터 : 위성통신단말기 또는 가입자 호스트 단말기로부터의 메시지 처리 및 관문 지구국에 대한 제어하는 운용 통제센터
- 7. 위성통신시스템 : 위성, 관문지구국, 망운용센터, 위성통신단말기 등으로 구성 된 통신시스템
- 8. 위성통신서비스(서비스): 위성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비음성 무선데이터, 인터넷, 전자메일, 위치추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 9. 가입자(계약자) : 회사와 위성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자
- 10. 가입자회선 : 가입자가 위성통신서비스에 관한 계약에 근거하여, 망운용센터 와 가입자가 지정한 위성통신단말기 사이에 설정한 전기통신 회선
- 11. 상호접속점 : 회사와 회사 이외의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상호접속협정에 근거 하여 접속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접속점
- 12. 상호접속사업자 : 회사와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
- 13. 위성통신서비스 계약(서비스계약) : 위성통신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가입자와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
-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제5조(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통신: 위성관문지구국과 가입자가 지정한 위성통신단말기 사이에 통신위성의 중계로 전기통신 회선을 설정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위성통신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내용	비고
오브컴위성통신서비스	오브컴 저궤도 위성을 통해 회사가 제공 하는 위성통신서비스	
IsatData Pro 서비스	Inmarsat 정지궤도 위성을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위성통신서비스	

제 3 장 계약체결



제6조(가입계약)

- ①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계약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회사 또는 위탁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2.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 등본
 - 3.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대표인 법인 등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의 사본
 - 4. 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계약자의 경우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5.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6. 단말기 기술기준확인증 또는 그 사본. 단, 기술기준 확인 증명이 부착된 단말기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가입승낙)

- ① 회사는 가입자의 이용계약서 및 신청서류가 회사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경우이를 승낙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이용 중에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계약 해지 후, 6개월까지 이용계약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 ③ 회사는 관련 설비 및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순서에 따라 계약을 승낙합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속할 때는 우선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1. 국가안보 및 치안 기타 재해관리 등 공공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서비스

제8조(이용계약에 대한 불 승낙과 승낙의 제한)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타인 명의의 계약
 - 2. 허위서류를 첨부한 계약
 - 3. 전파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그 계약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1. 계약자가 회사에 납부해야 할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3. 전파법령에 저촉될 경우
 - 4. 사업자들이 공동 구축한 고객 신용정보망에 불량 이용고객으로 등록된 경우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회사에 불량신용자로 등록된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요금납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승낙을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불 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위치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 ②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제공한 설비에 고 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수리하여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전기통신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가입자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단 가입자가 그 활용 등에 대해 동의한 개인 신용정보 또는 요금을 체납하는 등 신용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가입자의 정보는 신용정보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을 즉시 처리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기구(고객지원)를 설치 운영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 ⑤ 회사는 서비스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가입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가입자에게 고지할 사항에는 가입자가 선택한 요금의 종류, 요율, 가입자 식별 부호 및 이용자 보호 기구의 연락처 등을 포함합니다.
- ⑥ 회사는 위성통신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되는 통신 내역을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보관하는 통신내역의 항목: 일자/시간, 발신/수신 주소, 세부 사용 내용 및



사용량(데이터)

- 2. 통신내역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요금 청구, 고객서비스 제공(고 객 민원 해결 등), 통신사업 자간 요금 정산 등
- ① 회사는 제⑥규정에 따른 통신내역의 보유기간 및 이용 기간은 해당 통신내역의 최초 청구월로부터 6개월 이내 보관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신내역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 고객 및 해지 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2. 해지 고객이란 채권·채무 관계(나머지)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 관계 가 '0'이 아닐 경우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 고객에 대한 통화내역 보관과는 무관합니다.
 - 3.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 4. 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제10조(가입자의 의무)

- ① 가입자는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가입자는 단말기의 설치장소, 가입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③ 가입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는 단말기 등을 임의로 철거, 분해하거나 내부 회로를 조작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보수가 필요할 때는 예외로 합니다.

제 5 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11조(통신의 종류)

위성통신서비스를 이용한 통신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있습니다.

- ① 일반 통신 : 위성통신단말기 상호 간의 통신
- ② 상호접속 통신 : 위성통신단말기와 상호접속점 간의 통신

제12조(회사의 영업 구역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회사는 대한민국 전역을 영업 구역으로 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일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통신서비스 지역 내에서도 실내, 지하 주차장, 건물 음영지역, 터널, 산악지역 등 전파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13조(단말기 간의 통신)

오브컴 위성통신단말기 간의 통신은 그 단말기가 회사의 영업 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제14조(상호접속점 간의 통신)

- ① 상호접속점 간의 통신은 상호접속협정에 따라 회사가 정한 통신에 한합니다.
- ② 상호접속협정에 따른 상호접속의 일시 정지, 해제의 경우와 상호접속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을 휴지한 경우에는 해당 상호접속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관련된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서비스 개시일)

서비스 개시일은 이용계약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후 가입자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때로 합니다.

제16조(가입자식별부호)

- ① 표준통신의 가입자 식별부호는 회사가 지정한 방식으로 가입자가 정합니다.
- ② 회사는 업무 취급상 또는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가입자식별부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통신의 가입자식별부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해당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7조(단말기의 설치 등)

- ① 가입자는 서비스 개시일 이전에 서비스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단말기 등 설비를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② 단말기는 가입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회사에서 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타인사용의 금지)

가입자는 전기통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 이용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단말기 등의 점검)

① 회사는 가입자가 설치한 단말기 등이 서비스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가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가입자에게 바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0조(단말기 등의 유지보수)

가입자가 설치한 단말기 등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는 가입자가 하여야 합니다

제 6 장 이용정지

제21조(불온 통신의 금지)

가입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 니다

- ①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②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제22조(불온 통신의 제재 방법)

회사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불온 통신에 대하여는 그 취급을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 ① 회사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 통신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4조(서비스 제공 중단)

- ① 회사는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불온 통신의 단속)를 위반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타인사용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
 -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의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 4. 기타 전기통신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 ② 가입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서비스 제공 중단 및 해제 절차)

- ① 회사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제공 중단 7일 전까지 해당 가입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 지합니다. 다만, 해당 가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중단을 통지받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비스 제공 중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 제기할 때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서비스 제공 중단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단 기간 중에 그 중단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서비스 제공 중단을 해제합니다

제26조(서비스 제공 휴지)

- ① 회사는 시설 또는 기술상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는 그 서비스의 제공을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해당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제 7 장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27조(계약사항 변경 및 제한)

- ① 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비스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함께 계약변경 신청자가 계약당사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신분증 사본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2. 가입자의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3. 가입자가 제삼자에게 이용권을 승계하는 경우
 - 4. 휴대용을 제외한 단말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5. 가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
- 6. 가입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입자식별부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7. 가입자가 요금납부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8. 일시 이용 중단 및 재이용의 경우
- ② 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비스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방문 외에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주소변경
 - 2. 단말기 분실 등록 및 습득 등록
- ③ 가입자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가입자가 요금 등을 미납한 경우
 - 2. 회사와 체결한 서비스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
 - 3. 관련 설비 및 기술상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28조(이용권의 양도 및 승계 제한)

- ① 서비스이용권은 약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②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이용 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이용권의 승계를 제한합니다.
 - 1.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
 - 2. 승계 받고자 하는 자가 전파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3.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승계할 수 없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④ 이용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 의무는 이용권 승계일로부터 승계 받는 자에게 이전됩니다.

제29조(일시 이용 중단 및 재이용)

- ① 가입자가 일정 기간에 서비스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거나, 일시 중단 중인 서비스를 재이용하고자 할 때는 회사에 신청하여야합니다.
- ② 일시 이용 중단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에 3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가입자의 군입대 등으로 장기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서비스 일시 정지 기간과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일시 이용 중단 기간을 초과하였을 때 가입자가 일시 이용 중단 해제 등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회사는 가입자에게 통보한 후 서비스를 정상상태로 환원하고 이용요금을 정상 부과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말기의 훼손, 분실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회



- 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 ③ 일시 이용 중단 기간에는 송수신기능이 정지됩니다. 단, 분실된 단말기를 회수하기 위해 가입자가 선택한 때에만 최장 30일간 수신기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④ 가입자가 일시 이용 중단 중인 서비스를 재이용하고자 할 때는 회사에 신청하여 야 합니다.

제30조(서비스계약의 해지)

- ① 가입자가 서비스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회사나 계약을 체결한 위탁대리점에 가입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또는 법인등록부 사본)과 함께, 사용자의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해지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해당 구비서류(서명 또는 날인한 해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입자 신분증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한 후, 신청일까지의 요금을 납부 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 ② 또한, 가입자가 직접 서비스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경우, 가입자의 대리인이 해지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가입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에 대한 승낙을 얻은 후에 가입비 등 납부하여야 할 요금을 회사가 지정한 날짜 안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타인 명의 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계약임이 확인된 경우
 - 3. 가입자 측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후 1개월 이내에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4. 가입자가 전기통신 관련 법령, 약관 또는 회사와의 계약 등을 위반한 경우
 - 5. 전파법령에 저촉되어 무선국 허가가 취소된 때
 - 6. 가입자 측 사유로 서비스 개시가 1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 ④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자에게 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해지사유 통지 시에는 해당 가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8 장 요금 등

제31조(요금 등의 종류)

① 위성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요금 : 표준통신의 이용 대가로 납부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 가. 기본료 :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 는 요금
 - 나. 통신료: 통신위성 접속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이용요금
- 2. 가입비 : 오브컴 위성통신시스템에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드는 비용
- ② 기본료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산정하며, 통신료는 사용량에 따라 산정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32조(요금 등의 일할 계산)

- ① 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를 요금 월로 하여 월 정액으로 납부를 청구합니다.
- ② 월 정액으로 부과되는 요금은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 월 정액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날짜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수 계산에 있어서는 그날이 24시간 미만이더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 ④ 요금 월의 중도에 서비스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제공이 휴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날짜로 계산합니다
- ⑤ 요금 월의 중도에 월 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 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날짜로 계산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하는 달의 월 정액으로 합니다
- ⑥ 이 약관에 의하여 청구되는 요금(가산금과 불법 면탈 요금을 포함합니다)의 계산 결과 끝수가 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절사합니다.

제33조(서비스 제공 중단 중의 납부 의무)

① 가입자는 약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 휴지 중인 경우에도 기본요금의 5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4조(요금 등의 납부기일)

- ① 회사는 당해 요금 월에 발생한 요금을 그 다음 달에 청구합니다.
- ② 가입자는 회사가 미리 정한 납부일에 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계약의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시 청구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부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요금 등의 납부청구)

① 회사는 가입자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에 요금 등을 납부하도록 청구합니다.



- ② 회사는 요금에 따라 다음 달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같은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요금 등을 통합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 청구서를 납부기일 5일 전까지 가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 ⑤ 가입자는 회사에 신고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6조(요금납부의 특례)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 의무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회사가 정하는 자인 경우에 중앙불(상급 기관 또는 주된 사무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체납요금 등의 징수)

-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회사가 정한 납부 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다음 달 요금 청구 시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③ 회사는 가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 청구서가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배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38조(가입비의 면제)

가입이 해지된 가입자가 재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가입비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① 해지 후 3개월 이내인 가입자
- ② 면제 횟수: 1년 1회 (면제일로부터 재가입 때까지 기간 기준)
- ③ 승계 및 명의변경 제한 : 재가입 시점으로부터 3개월간 승계 및 명의변경 불가

제39조(요금 등의 이의신청)

- ① 가입자는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가입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40조(요금 등의 반환)

- ① 회사는 가입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하여 24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따라 기본료를 시간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 ②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는 그 과오납 된 요금 등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였을 때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할 때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그 상당액에 관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가입자에게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때는 반환 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41조(통신내역의 열람청구)

- ①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통신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신내역은 최근 6개월분만 제공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통신내역 요청할 때는 소정의 구비서류 제출하여 야 합니다.
- ③ 회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9 장 손해배상

제42조(손해배상의 범위)

- ① 회사는 가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속하여 24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와 제28조에 정한 서비스 제공휴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가입자가 청구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적용)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는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배상합니다. 이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



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 ③ 제2항의 손해배상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가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 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 근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0 장 위치정보 보호

제43조(위치정보 보호 목적)

- ①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의 이용조건 및 절차와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합니다.
- ② 회사는 위치 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리아오브컴(주) 대표이사 송형진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5층, 02-3444-7311

전자우편주소 : support@orbcomm.co.kr

제44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정의하는 기본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합니다.
- ②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합니다.
- ④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 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 ⑤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 제공일시 및 이용; 제공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 ⑥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⑦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 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⑧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 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합니다.

제45조(위치정보의 서비스 내용 및 수집 방법 개요)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정보의 서비스 내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사가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는 고객의 가입자 단말기에서 생성된 위치정보가 포함된 전문을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수신처로 전달하며, 회사는 통신량에 따른 사용료를 과금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E-mail로 위치정보를 문자의 형태로 직접 수신하거나, 또는 위치기반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이동체의 운용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은 GPS 장치로부터 획득한 위치정보를 고객이 선택한 애플리케이션이 탑재된 가입자 단말기를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전문 형태로 생성하여 위성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수신처로 전달됩니다. 단, GPS 장비가 없는 가입자 단말기는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제46조(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

- ① 회사는 시스템 운영 등의 사유로 개인위치정보를 별도 수집 및 저장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이 자의적으로 발신한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된 전문은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지정한 수신처로 자동 전달됩니다.
- ② 고객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는 고객이 지정한 수신처로 전달되며, 고객이 동의하지 않는 제삼자 외 타인 또는 타 기업 및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③ 고객이 사전에 동의한 제삼자에게 개인정보 및 사용 내용의 제공 시, 받은 자, 취득경로, 이용, 제공일시 및 이용 제공 방법 등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단말기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매회 즉시 통보합니다.
-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경우 수집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⑤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 업자 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 ⑥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47조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 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해 고객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고객은 언제 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시 회사는 즉각적으로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정한 서류양식 및 개인위치정보주체란 적절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8조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의 중지)

- ① 고객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시 회사는 즉각적으로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정한 서류양식 및 개인위치정보주체란 적절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9조 (서비스의 해진 후 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 보존)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시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확인 자료를 최소 1년간 보유할 수 있으며, 기타 법령 규정에 따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제50조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 제공사실 열람 및 정정 요청)

- ① 고객은 언제든지 등록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가 제삼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제공 사실확인자료의 열람 및 정정 요구 시 회사는 즉각적으로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정한 서류양식 및 개인위치정보주체란 적절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1조 (계약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와 위치정보 수집단말 장치의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실사용자를 명시하여야



- 하며, 실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② 서비스 이용계약에 명시한 계약자, 실사용자 외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자인 명의자를 개인위치정보주체로 간주합니다.
- ③ 법인이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법인이나 단체에 실제 사용자인 개인위치정보 주체를 특정하여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이나 단체는 개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여, 개인의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제52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전달시 제공 사실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 ② 개인위치정보는 회사의 위치정보시스템을 거쳐, 고객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위치정보수집장치, 위치기반사업자에게 전송된 위치정보는 개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영구 삭제되며 개인위치정보수집 수집, 이용, 제공 사실확인자료를 저장합 니다.
- ③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사실확인자료를 최소 1년간 보유할 수 있으며, 기타 법령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제53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합니다)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 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회사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② 「경찰법」제2조에 따른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회사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합니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 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 (이하 "실종아동 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합니다.)가 실종아동 등에 대한 긴 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제54조 (법정대리인)

-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할 때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② 법정대리인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하여 동의권 및 동의 유보권, 개인위치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권 및 일시적 중지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호의무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할 때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1. 8세 이하의 아동
 - 2. 금치산자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 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 다)

제55조 (면책 조항)

- ①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전달되는 자료의 정확성 또는 내용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사용하는 전자우편주소의 오류나 전자우편서비스 사업자, 고객이 지정한 위치정보수집장치, 위치기반사업자 및 통신 중개업체의 과실로 인한 서비스 불완전으로 발생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③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약관의 제43조 항을 따릅니다.

제56조 (손해배상)

고객이 회사에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는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57조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① 위치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하여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부 칙

- 이 약관은 200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약관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약관은 200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약관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약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약관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약관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약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약관은 2025년 3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위성통신서비스 요금표

1. 오브컴 위성통신서비스 요금

1) 서비스 요금 (금액단위 : 원, Byte)

요금 기준	요금	월간 무료 Byte	초과 1Byte당 사용료	비고
표준	20,000	600	3.3	
선택 1	22,000	1,800	3.3	
선택 2	25,000	3,000	3.3	
선택 3	29,000	5,000	3.3	

^{*} 데이터 전송기준 : 1 Byte

가. 장문 추가요금

장문A: 1회 전송량이 500~1,000 bytes인 경우: 2,000원/건당

장문B: 1회 전송량이 1,000bytes를 초과할 경우: 5,000원/건당

나. 수수료

휴지 수수료 : 2,000원/ 건당

단축주소 변경 : 2,000원/ 건당

2) 가입비: 33,000원/단말기당

* 상기 요금은 부가세 별도 기준입니다.



2. IsatData Pro 서비스 요금

1) 서비스요금

가. 표준데이터 서비스 (금액단위 : 원, Byte)

요금기준	월간 기본료	월간 무료 Byte	초과 1Byte당 사용료	비고
0K Individual Plan	11,000	0	4.4	
10K Individual Plan	30,000	10,000	2.2	
25K Individual Plan	45,000	25,000	1.1	
50K Individual Plan	70,000	50,000	1.1	
100K Individual Plan	100,000	100,000	1.1	

^{*} 데이터 전송기준 : 15 Byte (1Byte ~ 15 Byte = 15 Byte)

나. Pooled 데이터 서비스 (금액단위 : 원, Byte)

요금기준	월간 기본료	월간 무료 Byte	초과 1Byte당 사용료	비고
10K Pooled Plan	35,000	10,000	2.2	
25K Pooled Plan	50,000	25,000	1.1	
50K Pooled Plan	80,000	50,000	1.1	
100K Pooled Plan	120,000	100,000	1.1	

^{*} 데이터 전송기준 : 15 Byte (1Byte ~ 15 Byte = 15 Byte)

(10K Pooled Plan 가입자 10 ==> 10KB X 10 = 100KB 공동 사용)

2) 가 입 비

Gateway Account Activation : 423,000원 Mobile Activation (단말개통비) : 44,000원

3) ID 그룹 이전비: 43,000원

* 상기 요금은 부가세 별도 기준입니다.

^{**} OK Individual Plan :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목적에 한함. 최대 사용 기간 25일

^{**} Pooled 데이터 서비스 : 그룹 내의 장비들의 결합 상품